

글로벌 뉴스픽

GLOBAL NEWS PICK

PICK.1 차별금지법

미국 조지아주

화장실서 5세 여아 상대
트랜스젠더 성범죄 발생

미국의 한 유치원 여자 화장실에서
5살 여아가 같은 반 트랜스젠더인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미국 조지아주 디케이터Decatur에 있는 오크허스트 Oakhurst초등학교와 유치원은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트랜스젠더 학생 화장실 관련 지침에 따라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비록 2017년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화장실 권리 보호 지침을 폐기하였지만, 디케이터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트랜스젠더 화장실 방침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이 방침은 화장실뿐만 아니라, 락커룸, 스포츠 시설, 야외 학습용 숙소를 모두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성정체성에 따라 사용하도록 개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17년 11월에 이 방침에 따라 여자화장실 사용을 허락받았던 5세 남아가 다른 5세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 여아의 부모를 대리하고 있는 자유수호연맹 [Alliance Defending Freedom(ADF)] 변호사 단체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 학생의 안전이나 가해 학생의 여자화장실 사용 불허에 대해 아무런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밝혔다고 한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학교는 트랜스젠더 화장실 방침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모를 가족 및 아동 복지부에 가해자로 신고하였다. 이후, ADF는 연방 교육부 민권부서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트랜스젠더 화장실 방침이 학교를 아이들에게 위험한 곳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오크허스트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여전히 이 사건 발생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장실 방침을 트랜스젠더 학생 인권을 위해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동성애 / 트랜스젠더 전환 치료 금지법안 철회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전환치료를 불법 사기성 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법안(일명 '성적지향 전환치료 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가, 지난 8월 30일 철회되었다.

올해 2월 16일, 캘리포니아 소비자 구제법 Consumer Legal Remedies Act을 개정하여 성적지향 전환치료를 대한 서비스를 광고, 홍보,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는 법안(AB2943)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와 같이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혼돈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전환치료 상담과 서비스, 심지어 이와 관련된 서적을 판매하는 것조차 다 불법이 된다. 전환치료 관련 세미나는 물론, 반동성애적 내용의 목회적 상담과 조언도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더 나아가 개정안의 해석상 동성애를 죄로 여기는 내용을 담은 성경의 판매까지도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은 7월, 하원을 압도적으로 (50-10) 통과한 후, 8월에 상원에서 25-11로 통과가 되면서 민주당 소속 Jerry Brown 주지사의 서명 공포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자 로우Low 의원 본인에 의해 갑자기 철회되었다.

지난 8월 31일, 이 법안을 철회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 종교 단체인 캘리포니아 가족 연맹 [California Family Council(CFC)]의 보도에 의하면 로우 의원은 LGBT를 적극 지지하면서도 종교계 성직자, 목사, 전문 상담가, 탈동성애자들과 수개월 동안 만남을 가지며 이 법안이 그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 그는 성명을 통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격려를 받고 희망을 보았다고 하였고, 동성애자들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자신의 신념만을 추구하지 않고 반대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올바른 입법자의 자세일 것이다.

영국

한국

여성이라고 주장한 남성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동료 여성 수감자를 성폭행하다

최근 영국에서는 이웃 노인을 칼로 찌른 범죄로 남성 교도소에 수감된 남성 수감자가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해 여성 전용 교도소로 이감된 후 다수의 여성 수감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2018년 10월 11일자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스테판 우드라는 이 영국 남성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임에도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해 2017년 가을 영국 웨스트요크셔주의 뉴 홀 여성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그는 이후 그곳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네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남성으로서 강간과 아동성범죄 전력에 있는 이 남성은 2014년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말하며 카렌 화이트로 이름을 바꾸고 가발을 쓰는 등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해왔다. 영국 법무부는 그의 과거 성폭행 전력을 확인하지 않고 여성 교도소로 보낸 실수를 시인하고 사과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 2017년 1월, 영국 법무부는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성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강조하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수감자의 성별 변경절차를 간소화시켰다. 이에 따라 우드와 같은 생물학적으로 완전한 남성도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트랜스젠더로 인정되어 여성 전용 교도소로 이감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드는 총 4건의 성범죄 혐의 중 자신이 자백한 2건에 대해 유죄 판결과 8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판결 직후 남성 전용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젠더승인법(Gender Recognition Act) 제정에 따라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해진 영국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성(젠더)평등 정책' 시행과 '성정체성' 및 '성적지향'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추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바른 인권 교육인가?

경남도교육청은 9월 11일에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발표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6조에서 트랜스젠더와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과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제30조에서는 '성 소수자'를 포함하여 소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직원이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에 있는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조항(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도 있다.

그리고, 제7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학교가 학생에게 반성문·서약서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에서는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도록 했다.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도 없다(제10조 제2항).

이 조례안의 제정을 두고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 조례안이 입법이 되면 학교에서는 동성애의 보편적 유행성이나 윤리적 관점을 교육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동성이나 이성 간의 성행위를 하더라도 교사가 훈육을 할 수 없고, 흡연하는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면 인권 침해가 된다. 결국 동성애가 조장될 것이고 학생 간의 성이 문란해질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은 조례안 Q&A 자료를 통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성인권교육은 학습된 성적 권리를 통해 성희롱,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성폭력 예방교육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주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쿡 지역의 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스젠더가 된 고등학생과 위스콘신주 케노샤 지역의 여성에서 남성으로 트랜스젠더가 된 고등학생이, 각각 학교를 상대로 변경된 성에 따라 화장실과 락커룸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트랜스젠더 학생의 성정체성에 따른 학교 화장실 사용 요구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PICK.2 성평등 정책

헝가리



"젠더는 이데올로기일 뿐 과학이 아니다"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는 '젠더(사회적 성)Gender' 개념을 확산 및 보편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큰 가운데, 지난 10월 13일 헝가리 정부는 이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에 있는 모든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젠더 관련 연구를 금지시켰다. 올해 8월에 헝가리 정부는 이미 젠더 연구 프로그램의 승인을 불허하고,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는데, 이를 10월에 확정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졸탄 코바츠 Zoltan Kovacs 정부 대변인은 "헝가리에서는 젠더 전공 석, 박사들의 수요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젠더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경제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는 사회의 수요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전공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또 "헝가리 정부의 명백한 입장은 인간은 남성 아니면 여성 둘 중의 하나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인간은 각자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교육에 헝가리 정부는 공금을 쓸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졸트 세미엔 부총리는 젠더 연구는 하나의 이념일 뿐,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대학은 두 곳으로, 그 중 부다페스트에 있는 중앙유럽대학Central European University은 10월 16일 성명을 통해 "젠더 연구의 폐지를 규탄한다. 이는 학문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반대 의사를 발표하였다. 국내 일각에서는 젠더 연구가 마치 최첨단 학문인 것처럼 호도하기도 하는데, 헝가리의 사례는 젠더의 학문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느끼게 해 준다.



영국

성전환 아동 10년간 4,400+% 증가

성(젠더)평등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국에서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다. 아동들은 아직 성별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이들 중에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수가 급증한 것이다.

텔레그라프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9월 영국의 여성평등부 장관 페니 모던Penny Mordaunt은 지난 8년간 자신의 성을 바꾸고 싶어하는 어린 아이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 조사를 지시하였다고 한다. 2009년~2010년 사이에 남녀 아동 총 97명이 성전환 수술을 원했었는데, 2017년~2018년 사이에는 그 수가 총 2,519명으로 4,400% 이상 증가했다. 이에 여성평등부는 소셜 미디어와 학교에서의 트랜스젠더 이슈에 관한 교육이 어린이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 사춘기가 안 된 어린 아이들을 성전환을 위해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는 성(젠더)평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작년에 마련된 제2차 여성평등기본계획에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에 대한 번역으로 '성평등'을 포함시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서 아동들이 겪고 있는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우리나라에서도 곧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영국

“해리 왕자가 되어
토마스에게 청혼 연애 편지를 써보세요”

6세 아이들이 동성 연인에게 연애 편지를 쓰는 수업을 받았다.

성(젠더)평등 교육 수업의 일환으로 영국에 있는 뷰세이 랫지 초등학교(Bewsey Lodge Primary School)에서는 학생들에게 해리 왕자가 되어서 동성 하인인 토마스에게 청혼하는 연애 편지를 쓰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수업은 BBC Radio Manchester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9월 18일 공개한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학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성소수자(LGBT)에 대한 교육을 평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떠한 형태든지 동성에 혐오, 트랜스젠더 혐오와 양성애 혐오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친LGBT Pro-LGBT 학교로서 수상 경력도 있는 이 학교는 교복도 치마든 바지든 성별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과 같이 성(젠더)평등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나 성전환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이라는 걸 어려서부터 교육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성애나 성전환 이슈가 내포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점과 보건적 유해성을 교육할 수 없게 되었고, 많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층에서의 동성애와 성전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는 이런 무분별한 성(젠더)평등 교육이 마치 선진국의 앞서는 교육인 양 호도하며 무조건적으로 추종해야 한다는 주장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분별하여야 한다. 2015년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을 포함한 급진적인 성(젠더)교육을 시행해 오다가 올해 9월 이를 전면 폐지하고 1998년의 성교육 교과 과정으로 회귀하기로 결정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인권교육 의무화하는 인권교육지원법안 철회

지난 8월 24일, 정성호 외 19명의 여야 위원들이 공동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이 10월 1일 최종적으로 철회되었다. 인권교육지원법안은 지난 2014년에도 유승민 외 다른 의원들이 발의하였다가 철회되었던 전례가 있다.

이 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구급보호시설,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직원, 교원, 학생, 종사자, 수용자, 군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안 제2조 제5호와 제6조) 문제는 제2조 제1호에서 인권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적 지향’ 차별금지가 포함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는 인권을 인권교육으로 어린이집 유아로부터 시작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이 법안이 철회가 된 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성명에 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각 영역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꾸준히 외쳐온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인권교육이 인권교육지원법안을 통해 국민적 합의도 없이 미래 세대의 교육 현장을 급습할 뻔한 것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이 자진 철회됨에 따라 유엔의 인권교육 중요성 강조와 국제적 흐름을 거스른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PICK.3 생명 윤리 낙태

미국 앨라배마주

태아의 인격체 인정한
앨라배마 대법원

지난 10월 19일, 미국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임신중인 아내를 살해한 가해자 제시 리벨 필립스(Jessie Livell Phillips)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다. 앨라배마주법에서는 2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한 행위를 가중처벌하는데, 2009년 법을 개정하여 ‘사람’의 정의에 태아도 포함시켰다. 이 개정법이 최초로 적용되어, 제시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판결문을 쓴 마이클 볼린 대법관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였던 태아도 하나의 인격체이고 사람이라고 판시하였다. 산모의 결정에 따라 24주전까지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에 낙태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린 역사적인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과는 매우 상반되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앨라배마주 형법에 의하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 보다 더 낮지 않다.”라고 실시하면서, “살해 당시 태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엄청난 일의 가중처벌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파커 대법관은 별개 의견에서,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인해 계속되고 있는 법적 변칙과 논리적 오류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연

방대법원은 역사적 또는 헌법의 근거도 없이 태아의 권리에 대한 예외를 만들어 냈고,” 많은 주들로 하여금 “태아의 불가침의 생명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번 판결과 같은 맥락에서 최근 11월에 앨라배마주는 주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개정안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정부가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낙태를 우리보다 먼저 합법화했던 미국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고, 최근 새롭게 구성된 연방대법원이 1973년의 낙태 합법화 판결을 파기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고, 위헌 여부에 대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45년의 세월 동안 미국인들은 낙태 합법화 판결로 인한 뼈아픈 결과를 몸소 체험하였고,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생명을 박탈할 수밖에 없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깊이 숙고하여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국제 종교 자유의 날을 맞이한 미국 북한 인권에 대해 말하다.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Day
: 10월 26일, 2018년]



지난 10월 27일, 미국 국무부가 1998년에 제정된 국제종교 자유법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IRF Act)의 20주년을 맞이하여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는 국제종교자유법은 “미국의 성공을 이끈 미국 헌법 창시자들의 확고한 신념,” 곧, “개인이 자신이 선택한 것을 믿을 자유는 신이 준 권리 God-given right다”라는 확신 가운데 제정된 법이라고 설명하며, “종교의 자유 수호는 미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

미 국무부는 위 성명서에 앞서 하루 전, 북한 종교의 자유 탄압에 대한 탈북자 지현아씨의 이야기를 유튜브 ShareAmerica라는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미 국무부 국제정보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이 영상에서 지현아씨는 4번의 탈북과 3번의 복송, 강제 낙태와 고문, 인신매매,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성경책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핍박 등에 대해 담담하게 나누면서 종교의 자유와 인권이 박탈된 북한에 대해 알렸다.

현재 우리 정부는 평양선언 비준을 강행하면서까지 평화와 종전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은 종전 선언에 앞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 즉 ‘북한의 비핵화’가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알리고 있고,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북한 주민의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PICK.5 종교의 자유

PICK.6 표현의 자유

한동대에서 징계 당한 학생의 명예훼손 소송

한동대학교 교내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열어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한 학생이 지난 8월 27일 한동대학교 법인과 교수 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11월 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렸다.

앞서 작년 겨울 한동대학교에서는 몇몇 학생들의 주도로 페미니즘 강연이 열려 교내외로 큰 논란이 일었다. 이 강연에서는 여성이 성을 상품처럼 자유로이 매매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 동성애 등 성적체성의 자유, 폴리아모리(비독점 다자연애) 등이 거론되었다. 언론 매체 ‘뉴스민’은 9월 7일자 기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강연을 교내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학교 측이 사전에 불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생들이 강연을 강행했으며, 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관련 학생들이 교수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언론을 이용해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 측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징계를 받은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여부에 대하여 학내에서 긴급 현장조사까지 실시하자,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지난 3월 12일 규탄성명을 발표하며 “국가인권위의 방문조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혐오표현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발의

요즘 들어 소위 ‘혐오표현’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신용현의원 등 10인이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에 대한 차별적 모욕적 발언’을 규제하여 혐오범죄와 같은 사회문제를 근절시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지난 9월 18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4호에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반복적 혹은 공공연하게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차별적 언어나 편견을 조장하는 글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 운영자가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차별이나 혐오표현을 한 글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수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논의, 토론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교리에 의한 표현도 불법이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법안은 10월 11일에 철회가 되었는데, 이와 같이 법제화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월 13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혐오표현규제법안’도 있었는데, 이 법안에서는 혐오표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혐오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 기준도 없이, 동성애 또는 타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의견 교환까지도 혐오표현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반론이 일자, 3월 5일에 철회가 되었다.